

쇠고기 이력제¹⁾

전상곤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도입 배경

사람이 태어나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한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동네로 이사하거나 누구와 결혼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정부에 신고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고의 의무는 생이 마감될 때까지 지속된다. 즉 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곳에 살고 있고 어디에서 생을 마감하는지 그 내력을 알 수 있다.

가축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어느 가축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느 유통 단계를 거쳐 어느 지역 소비자에게로 판매되는지 알 수 있을까? 만약 그 이력을 알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혜택이 적지 않을 것이다. 가축의 이력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가축 질병의 발생에 따른 전파 경로와 이의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 식탁에 올라온 축산물에 문제가 있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근래 들어 유럽,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광우병이나 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육류에 대한 이력추적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해외 사례

EU(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에서도 식품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소의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과 식품 등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먼저 EU(유럽연합)는 1992년에 가축의 보유상태 등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던 것이 1997년에 소

1) 이 글은 '쇠고기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meatwatch.go.kr)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의 개체식별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에 쇠고기의 유통단계에 대해 이력제를 실시하였다. 2005년 1월부터는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이력제 적용이 의무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97년에 시범사업이 실시되던 것이 2003년 12월에 생산단계에 시행되었고, 2004년 12월부터는 도축 이후 가공, 판매, 음식점 등 유통단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호주에서는 1996년 소의 질병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증명과 개체이동의 파악을 목적으로 출하증명제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에는 EU(유럽연합)의 요구에 따라 국가가축개체식별체계(NL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004년에는 NLIS를 이력사업의 표준으로 정하고 모든 주에서 귀표 부착을 의무화하였다.

국내 도입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가축들에 비해 먼저 국내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 이력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쇠고기 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유통되는 소와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와 쇠고기의 위생 혹은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으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거나 둔갑하여 판매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판매되는 쇠고기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시범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2007년 12월 21일에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표되었고, 2008년 들어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서 본 사업이 시행되었고, 2009년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확대되어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표 1).

쇠고기 이력제 사업 추진체계

국내에서 시행 중인 쇠고기 이력제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쇠고기 이력제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점검, 예산확보, 집행상황 감독, 법령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쇠고기 이력제 사업의 시행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농협중앙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구 축산물등급판정소)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그림 1). 농협중앙회는 귀표의 구입 및 배부, 신고사항 접수 및 관리, 교육·홍보 및 현지 지도점검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가공장과 판매장에서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DNA 동일성 검사, 전산시스템 구축,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축협, 관련협회,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별 협의체에서는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폐사), 이동 등의 내용을 전산에 입력할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시·도의 위생검사기관에서는 도축장에서 귀표 부착을 확인하고 도축검사결과를 전산에 입력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을 통해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지도 역할을 한다. 도축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한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표 1. 쇠고기 이력제 사업의 추진 경위

년도	사업내용
2004년	10월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2005년	8월 시범사업 실시 상황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
2006년	지역단위를 추가하고 참여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2007년	12월 21일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표
2008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부터 본 사업 시행
2009년	6월 22일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2010년	12월 22일 수입쇠고기까지 유통이력제 확대 시행

권한의 일부를 수입검역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 위임하여 통관부터 국내 유통, 판매까지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에 대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게 되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은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가공장(일),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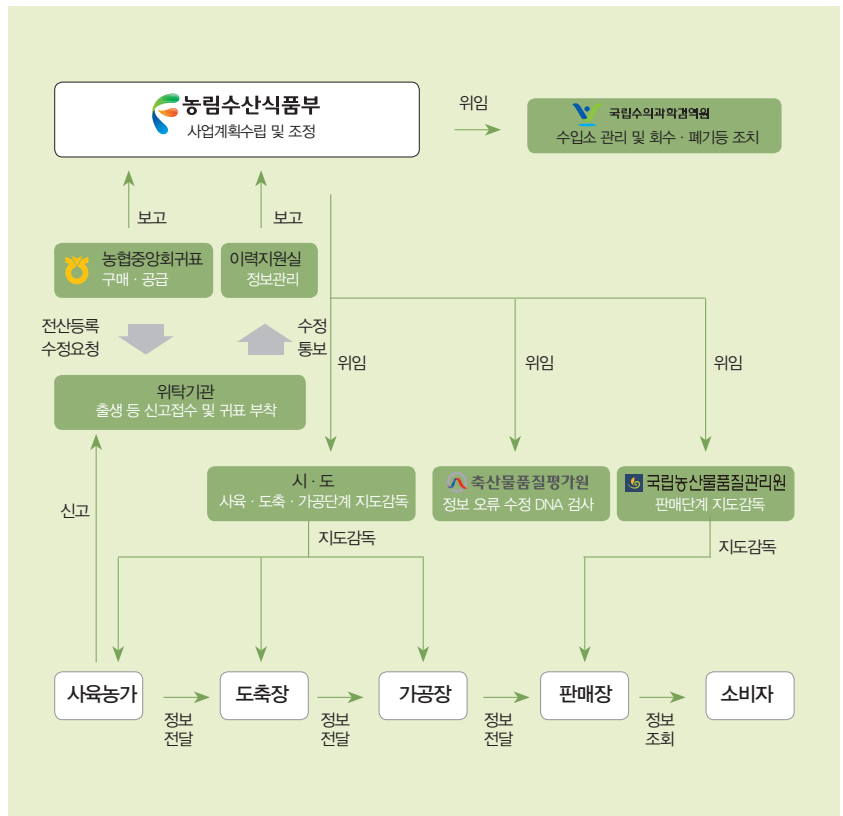


그림 1. 기관별 역할(자료: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쇠고기 이력제의 사업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져 시행된다(그림 2).

첫째, 사육단계에서는 송아지 출생 시 위탁기관에 서면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귀표를 부착한다. 귀표 부착 후에는 이력추적시스템에 개체 정보를 입력한다. 양도나 폐사의 경우도 위탁기관에 신고를 하며,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에도 도축장에 출하 농가의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관련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둘째, 도축단계에서는 도축검사 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며, 검사관은 위생검사 결과를 전산에 입력한다. 소와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한다. 이 과정에서 DNA 시료를 채취하고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우송한다. 축산물품질평가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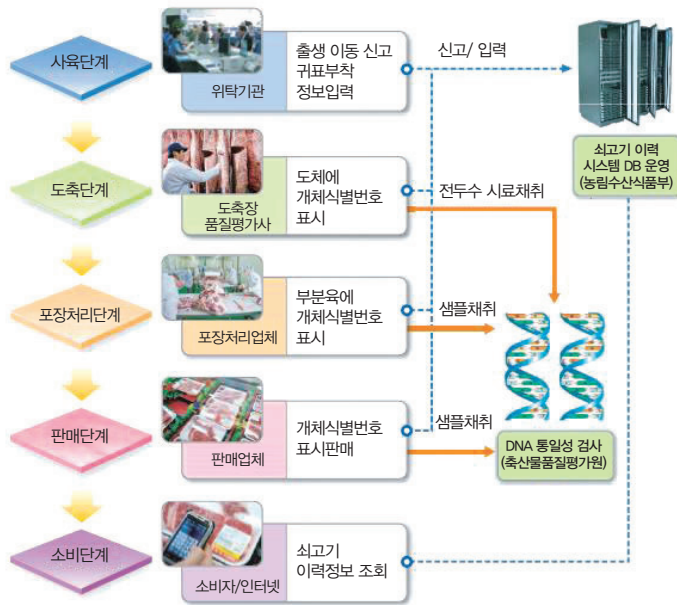


그림 2. 사업추진체계(자료 :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셋째, 포장처리단계에서는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하며,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한다. 박스 포장의 경우,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개체식별번호와 일치된 라벨을 겹 포장지에도 부착한다.

넷째, 판매단계에서는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을 진행하고, 포장지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다.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게시하여 판매하고, 소포장 단위의 경우 각각에 라벨을 부착한다.

다섯째,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는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여 쇠고기의 이력정보(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쇠고기 이력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 및 민원처리를 위해 이력지원실(콜센터, 1577-2633)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이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이용하여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열고 6626을 입력하고 인터넷을 접속한 후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쇠고기의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내산 쇠고기는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 접속하고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meatwatch.go.kr>)에 접속한 후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그림 3. 휴대전화 조회방법 단계별 설명(자료: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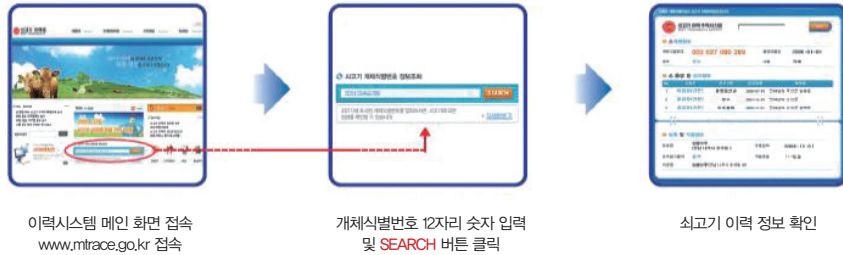


그림 4. 인터넷 조회방법 단계별 설명(자료: 쇠고기 이력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

도입 효과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및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둘째,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육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소의 혈통과 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하여 관리하면 가축개량과 농가 경영개선 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쇠고기 이력제는 유통경로의 투명성, 거래의 공정성, 원산지 허위표시와 둔갑판매 방지 등에 큰 기여를 한다. 또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원인규명 및 문제 식육의 회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더불어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